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45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이소영·장철민·채현일

김태년 • 박지원 • 박지혜

전용기 · 김성환 · 김한규

김성회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,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.

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,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 고 있음.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%보다 낮은 경우에 는 자산가치의 80%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(시행령 제 54조제1항 단서).

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,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, 낮은 주가가 상속·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.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,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, 합병,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.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(PBR)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

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%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%로 하고자함.

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·증여세 20%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 고자 함.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 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(안 제63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제1호 중 "제63조제1항제1호가목"을 "제63조제1항제1호가 목 또는 같은 조 제3항"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"이 호에서"를 "이 조 및 제73조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1항제1호"를 각각 "제1항제1호나목"으로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"를 "최대주주등의"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조및 제73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상장주식을 제1항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"이라 한다)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평가한 1주당 가액(그 가액이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

에는 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말한다)을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. 제73조제1항제1호 중 "소재하는 부동산"을 "소재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물납의 적용례)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평가의 원칙 등) ① 이 법	제60조(평가의 원칙 등) ①
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	
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	
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	
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시	
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	,
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	
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.	<u>.</u>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	1
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	
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제63조	
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	
제외한다)의 경우: 제63조제1	<u>제63조제1</u>
<u>항제1호가목</u> 에 규정된 평가방	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
법으로 평가한 가액	<u> 3항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	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 -

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.

#### 1. 주식등의 평가

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 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이하 이 호 에서 "상장주식"이라 한 다)은 평가기준일(평가기 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 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 을 기준으로 한다) 이전 •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 된 매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 은 거래소(이하 "거래소" 라 한다) 최종 시세가액 (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)의 평균액(평균 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

1
가
이 조 및
제73조에서

일 이전 ·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•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 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· 이후 각 2개월의 기 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 의 평균액으로 한다). 다 만, 제38조에 따라 합병으 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 다)으로 소멸하거나 흡수 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 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 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 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.

나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② (생략)

<신 설>

· 나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
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
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
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
(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
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대원에서법」 제14조제2항에

"최대수수등"이라 한다)의 상장
주식을 제1항제1호가목의 방법
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당 순자
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
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자산평
가최저주식가액"이라 한다)보
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
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
가액(그 가액이 자산평가최저
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
자산평가최저주식가액을 말한
리 ) 이 기리고 되지 그 테스크 크
다)을 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
<u>나)을 상상수식의 가액으로 한</u> <u>다.</u>
<u>다.</u>
<u>다.</u> ④ 제1항제1호나목
<u>다.</u> ④ 제1항제1호나목 <u>최</u> 대

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④ (생 략)

- 제73조(물납)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 가할 수 있다. 다만, 물납을 신 청한 재산의 관리·처분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.
  - 1. 상속재산(제13조에 따라 상 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) 중 부 동산과 유가증권(국내에 소재

<u>제1항제1호나목</u>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73조(물납) ①
· 
1
1
<u>소재</u>

하는	= ;	부동	<u>-산</u>	등	대	통	령 i	렁으	로
정칭	하는	- 돌	납납	에	충	당	할	수	있
는	재	산스	으로	한	-정	한	다)	의	가
액 c	)	해딩	} /	상속	재-	산)	가약	백의	2
분의	의 1	윽	ネミ	과회	<b>ト</b> フ	싞			

2.	· 3.	(생	략)
2.	· 3.	(생	략

② (생 략)

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
<u> 상장주식</u>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